



FTA 품목분류

관세율표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오수교 | KPMG 관세법인 관세사



관세율표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 품목분류와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설



오수교

KPMG 관세법인 관세사

필자는 관세청 중앙관세
분석소장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5년 9월부터 KPMG
관세법인에서 품목분류와
FTA 전문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1.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하는 물품

1) 조건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¹⁾으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은 우선 조제(preparation)하여야 한다. 조제에 관하여 관세율표나 HS 해설서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인삼 추출물(제1302호)과 포도당(제1702호)의 혼합물과 같이 둘 이상의 다른 식료품(또는 식품 첨가제)을 혼합한 것 또는 본래 식료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화학적 특성이 변화된 식료품(예: 로즈힙을 압축 여과 농축한 주스, 검은 뽕나무 잎을 발효 건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식료품의 저장성이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냉장·냉동·염장·건조·훈제와 같은 가공은 제2106호의 조제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육류나 어류의 조제 식료품(제1601호~제1605호), 곡물이나 곡물가루의 조제 식료품(제1901호~제1905호), 식용 채소나 과실의 조제 식료품(제2001호부터 제2009호까지) 등은 제2106호로 분류할 수 없다.

끝으로 식용에 가능한 상태(condition)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부패나 변질 또는 오염 등으로 식용할 수 없으면 용도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물 사료용(제2309호), 비료용(제3101호), 음식물 쓰레기(제3825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형

HS 해설서에서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로는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조리·용해나 물이나 밀크로 끓이는 등의 가공을 한 후에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다.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에는 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 꿀, 식이 보조제(food supplement), 인공감미료로 만든 껌(gum) 등이 해당한다.

물에 끓여 식용하는 조제품에는 인삼차(인삼추출물과 포도당이 혼합된 것)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합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하는 수출입 물품 중에서 식이 보조제(food supplement)가 거래 비중도 높고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 기준의 적용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으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세율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는 소호 제2106.10호(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와 제2106.90호(기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호 제2106.10호는 거래 대상 물품도 적고, 특별히 쟁점이 될 부분도 없어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 제2106.90호(기타)에 해당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2. 식이 보조제(food supplement)²⁾의 분류 기준

HS 해설서 제2106호에서 “식이 보조제란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그러나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제3003호나 제30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한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HS 해설서 제2106호의 기본재료와 첨가제인 활성 성분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종류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본재료에는 곡물의 가루나 전분 또는 포도당이나 설탕과 같은 물질이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활성 성분에는 유산균·홍삼 추출물·레시틴·옥타코사놀·글루코사민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물론 이러한 식이 보조제의 섭취 목적은 활성 성분에서 얻을 수 있는 약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물은 기본재료가 중량이나 부피 기준으로 볼 때 활성성분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기본재료는 활성 성분의 섭취나 가공을 쉽게 하거나 또는 운반체(carrier)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활성성분을 섭취되는 양이 소량인 점을 고려할 때에 기본재료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이 식이 보조제를 분류할 경우에 특히 활성 성분의 종류와 약리적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물론,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과의 구분도 중요하므로 약사법의 제반 규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식이보조제는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강화식품, 보건식품 등 다양하게 호칭하나 이들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글에서 식이보조제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게 한 개념으로 한다.

3. 제2106호에서 제외하는 물품

식이보조제를 포함한 조제 식료품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106호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섭취나 포장에 쉽도록 캡슐에 넣은 경우도 이와 같다. 특히 아래 제외하는 물품 중에서 (1), (3), (5), (7)항은 세율과 FTA 적용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류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채소류 혼합물

서로 다른 종(種)의 건조 채소류 혼합물이 직접 음료용 향미료나 음료 제조용 추출물 제조용이라도 제0712호로 분류한다. 가루 상태인 경우도 이와 같다.

(2) 향신료 혼합물

서로 다른 종(種)의 향신료끼리의 혼합물이나 향신료와 채소류나 약용식물 등과의 혼합물로 향신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면 직접 음료용 향미료나 음료 제조용 추출물 제조용이라도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로 분류한다.

(3) 육이나 어류 등의 조제품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은 제1601호부터 제1605호로 분류한다.

(3) 의약품

의약품은 제3003호나 제3004호로 분류하며, 이와 관하여는 아래 4항을 참조하면 된다.

(4) 효소 조제품

제3507호로 분류한다.

(5) 밀크 조제품

밀크를 기본 성분으로 한 조제품은 제1901호로 분류한다.

(6) 효모 조제품

제2102호로 분류한다.

(7) 주류

음료 형태의 주류에 비타민이나 철 화합물을 첨가하여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것은 제2205호나 제2206호부터 제2208호로 분류한다.



4. 의약품(제3004호)과 식이 보조제의 구분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는 것이고, 식이 보조제는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의 유지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류나 무기염을 함유한 식이보조제는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의약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의약물을 함유하는 유사한 식료품과 음료라도 이들 물질이 단지 식이요법상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그 물품의 에너지 부여나 영양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그 맛을 개량하기 위하여 첨가한 것이면 그 물품이 본래의 음식물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한에서는 식이 보조제로 취급한다.

다만, 식이보조제의 성격의 물품이라도 입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맥을 통하여 공급하는 형식의 물품은 의약품으로 취급한다.

품목분류에서는 위의 사항이 두 물품의 구분 기준이 되나, 실제 의약품이나 식이보조제(건강기능식품)로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보건당국에서 각각 그에 적합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2106호의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2106호의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호(heading) 변경 기준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2단위 류(chapter)나 4단위

[표 1] 주요 FTA협정의 제21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1	한-미 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2	한-EU FTA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제품의 호의 것은 제외 - 사용된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는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그리고 -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3	한-아세안 2017 FTA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4	한-호주 FTA	6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한다)
5	한-캐나다 F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1901.90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1211.20호 또는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6	한-중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	한-베트남 F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한다)

※ 이 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편의상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이므로 실무에 적용할 경우는 반드시 원문 확인이 필요

위 규정 적용의 이해를 돕고자 어느 조제 식료품의 BOM 명세표가 아래 표2와 같은 경우로 가정하여 위 7개의 FTA 적용 여부를 판정하면, 한-호주·한-캐나다·한-중 FTA·한-베트남 FTA는 적용이 가능하고, 한-EU와 한-아세안은 공장도가격이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반면에 한-미 FTA는 제21류에 속하는 ②과 ⑤의 원재료가 비원산지 재료이므로 특혜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다.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의 FTA를 적용할 때 유념할 사항은 혼합된 구성 성분 중에서 비원산지 재료가 어느 한 성분이라도 제2106호에 해당하면 원산지 물품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특히 소량의 첨가제 (예: 품질 보존제)가 그런 사례에 해당할 수도 있다.

[표 2] 조제 식료품 BOM 명세표

번호	원재료 품명	HS code	원산지 여부
①	Red ginseng powder	1211.20	yes
②	Green tea extract	2101.20	no
③	lactose	1702.19	no
④	L-theanine	2922.49	no
⑤	Dry inactive yeast	2102.20	no
⑥	Vitamin C	2936.27	no
⑦	Coating Agent(mixture)	2106.90	yes

6. 결론

제2106호의 조제 식료품이 잔여 호인 점을 고려할 때에 품목분류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점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BOM상의 모든 개별 원재료의 HS code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만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품목분류 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 통일되게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입국과 수출국에 따라 견해가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수입국의 과세당국에서 최종결정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수출자가 제공하는 HS code의 적합성을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품목분류 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